

대전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가합10434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2016. 5. 25.

판결 선고2016. 7. 6.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아래 각 금원을 지급하라.

가. 268,848,164원

나.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267,022,404원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2015. 12. 4.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

2.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2014. 9.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95,741,84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95,741,8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A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데 따른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각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에 따라 '제0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2012. 4. 5.	2013. 4. 5.(2015. 4. 3.로 연장)	100,000,000원(90,000,000원으로 변경)	100,000,000원
2	2013. 3. 29.	2014. 3. 28.(2015. 3. 27.로 연장)	90,000,000원	100,000,000원
3	2013. 3. 29.	2020. 3. 29.	81,000,000원	90,000,000원
합계	271,000,000원(261,000,000원으로 변경)	290,000,000원		

2) 피고 A의 이사인 피고 B는 피고 A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보증계약 제3, 10조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률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및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행사에 든 비용, ③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 2015. 6. 25.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가 2015. 3. 3. 국민은행에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2015. 6. 25. 아래 [표2] 나.항 기재와 같이 합계 267,022,40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대한 추가보증료는 같은 표 다.항 기재와 같고, 원고가 구상채권의 보전조치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803,350원이다.

1	제1 보증계약	92,077,002원	262,840원
2	제2 보증계약	92,181,600원	438,900원
3	제3 보증계약	82,763,802원	320,670원
합계	267,022,404원	1,022,410원	

다. 이 사건 매매계약

피고 B는 2014. 9. 30. 피고 C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4. 9. 29.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 B의 재산관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4. 9. 29. 무렵 피고 B는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이 사건 아파트	425,000,000	국민은행 근저당(실제 피담보채무)	229,662,585
	피고 C 근저당(채권최고액)	100,000,000	
	이 사건 보증계약 채무	261,000,000	
합계	425,000,000	합계	590,662,585

[인정 근거]

○ 피고 A, B: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아산시장 및 KB국민은행 아산배방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구상금 청구)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대위변제금과 추가보증료, 법적 절차비용 합계 268,848,164원(=267,022,404원 + 1,022,410원 + 803,35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67,022,40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6.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위 피고들에게 최종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4.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사해행위취소청구)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및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5. 3. 3. 피고 A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5. 6. 25.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국민은행에 합계 267,022,404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4. 9. 29.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및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가 피고 A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및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는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B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 C의 주장과 같이 대물변제라고 하더라도, 그 대물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다.

다) 앞서 본 피고 B의 재산관계,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 C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3) 피고 C의 선의 항변 가)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D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이에 대한 대물변제로 위 대여금채무의 물상보증인이자 연대보증인인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대물변제받았다. 피고 C은 D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 피고 B와는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B의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 C은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2) 을다 제3호증의 1, 2, 을다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 C은 2013. 9. 17. D에게 70,000,000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 C 앞으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② 피고 C은 2012. 6. 30. D에게 202,634,110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B가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피고 C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2)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이 법원의 KB국민은행 아산배방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의 채권최고액 284,4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자를 피고 C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던 사실, 피고 C이 2014. 9.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2014. 11. 11. 위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말소 당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실제 피담보채무는 229,258,15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 3.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425,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의 범위 내로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인 425,000,000원에서 위 국민은행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당시 실제 피담보채무 229,258,157원과 원고가 구하는 피고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을 공제한 95,741,843원(=425,000,000원-229,258,157원-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95,741,8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노행남

판사계훈영

판사차호성

별지